

2023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
2023.07.21.(금)

I 자격요건

- 2023-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여 선발 순위가 확인된 학생
- 학적상태 : 당해 학기 현재 우리대학 재학생
 - ※ 제외 대상 : 외국인 유학생, 휴학생, 졸업생, 조기취업생, 산업체 위탁생, 시간제 등록생, (원격)평생교육원 등록생
- 성적기준 :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 70점이상, 12학점이상 취득
 - ※ 신입생, 편입생, 직전학기 대학 취득 성적이 없는 복학생,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
- 소득기준 : 0분위(기초수급자) ~ 8분위

II 선발방법

1. 심사 절차

단계	내용
심사 1단계	장학생 신청 자격 요건 충족 확인
심사 2단계	가계소득수준 평가, 성적평가 및 인성(면접)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순으로 선발
심사 3단계	동점자 처리 및 우선 선발 등을 거쳐 장학생 최종 선발

2. 신청 자격 요건 제한

- 1) 근로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.
 - 학과실습실 관리를 위한 타학과 학생 선발 제한
 - 근로지 업무 특성상 특정 전공 분야의 학생 선발
 - 부정근로, 근무태도 불량 등의 불성실한 근로 이력이 있는 학생 및 대학 생활이 불량한 학생

- 특정 성별, 군 경력 및 기 근로경험 우대 등 차별적 기준 적용에 따른 불공정한 근로장학생 선발 불가

- 2) 학과, 전공 등에 대한 근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접수대장에 우대사항 및 제한사항을 미리 표기하여 안내한다.

3. 우선 선발

- 근로지별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선 선발 유형으로 선발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학생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
- ※ 우선선발 가능대상 : 다자녀가구, 북한이탈주민 가구, 국가유공(보훈)자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, 학업·육아병행 학생,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

4. 소득분위적용 배제 선발

-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는 소득분위 9, 10분위도 선발 가능
- 소득분위적용 배제 선발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학생복지부로 제출해야 함

5. 대체 선발

- 기선발된 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, 근로시간초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체 선발 가능
- 대체 인원 선발시 동일한 선발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학생 선발
(단, 별도 추가 선발 절차 없이 직전 선발 결과의 차순위 학생을 대체로 선발 가능)
-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 가능
 - 기선발된 근로장학생의 단기 연수 및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근로가 불가한 경우 (근로 가능 기간은 최대 2주 이하)
 - 학기별 근로 가능한 잔여기간이 3주 이하인 경우

6. 대체 근로지 선발

- 기배정된 근로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기선발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선발 공고 절차 없이 근로학생이 미배정되거나 추가 배정이 요구되는 타 근로지에 우선 선발 가능
(단, 근로학생의 부정근로, 근무태도 불량 등의 불성실한 근로 사유로 인한 근로중단시 적용 불가)
- 근로 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한 경우
- 최초 공지된 근로 시간 또는 기간의 불일치로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

III 배점기준

단계	항목	배점 기준			
		교내근로		교외근로	장애도우미
		계열/학과	행정부서		
1단계	○자격요건 확인	-	-		
2단계	○가계소득수준 평가:선발 순위 확인	30	35	30	
	○성적 평가: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	30	35	30	
	○인성 평가:라이프가이드 점수 및 면접	40	30	40	100
3단계	○최종 선발(우선 선발 및 동점자 처리)	-	-		
총점		100	100	100	100

※ 교외근로기관 중 계열/학과와 무관하게 대학(학생복지부)과 직접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내근로(행정부서) 배점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.

IV 근로지별 세부 선발기준

1. 계열/학과(학과사무실, 학과실험·실습시설)

1) 가계소득(선발순위)수준 평가(30점)

소득 분위	1순위(0~4분위)	2순위(5~6분위)	3순위(7~8분위)
점수	30	25	20

2) 성적 평가(30점)

백분위	95점이상	90점~95점미만	85점~90점미만	80점~85점미만	75점~80점미만	70점~75점미만
점수	30	28	26	24	22	20

※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, 편입생, 전공심화 입학생은 중간 점수 25점 일괄 적용

※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은 국가장학금 심사 성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

3) 인성 평가(40점)

○ 라이프가이드성적(20점)

백분위	95점이상	90점~95점미만	85점~90점미만	80점~85점미만	75점~80점미만	70점~75점미만
점수	20	18	16	14	12	10

- ※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, 편입생, 전공심화 입학생은 중간 점수 15점 일괄 적용
- ※ 직전학기 라이프가이드 과목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 적용

○ 교수 평가(20점)

구분	배점				비 고
근면(성실)도	10	8	6	4	마일리지 점수, 봉사활동 시간, 학과 행사 참여도, 강의 출결 사항, 학습 태도 등을 고려
사회성(책임감)	10	8	6	4	

- ※ 교수 평가시 세부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계열/학과장이 협의하여 평가

2. 행정부서(계열/학과사무실, 학과실험·실습시설을 제외한 대학시설)

1) 가계소득(선발순위)수준 평가(35점)

소득 분위	1순위(0~4분위)	2순위(5~6분위)	3순위(7~8분위)
점수	35	30	25

2) 성적 평가(35점)

백분위	95점이상	90점~95점미만	85점~90점미만	80점~85점미만	75점~80점미만	70점~75점미만
점수	35	33	31	29	27	25

- ※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, 편입생, 전공심화 입학생은 중간 점수 30점 일괄 적용
- ※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은 국가장학금 심사 성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

3) 인성 평가(30점)

구분	기본태도	업무능력	근로의지
배점	10	10	10

- 근로의지, 태도, 업무 능력 등을 면접을 통해서 평가
- 면접 평가는 근로 시설 부장 또는 근로 담당자가 실시
- 인성(면접) 평가는 근로 기관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, 생략시 가계소득 수준과 성적 배점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순으로 선발

3. 교외근로

1) 가계소득(선발순위)수준 평가(30점)

소득 분위	1순위(0~4분위)	2순위(5~6분위)	3순위(7~8분위)
점수	30	25	20

2) 성적 평가(30점)

백분위	95점이상	90점~95점미만	85점~90점미만	80점~85점미만	75점~80점미만	70점~75점미만
점수	30	28	26	24	22	20

※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, 편입생, 전공심화 입학생은 중간 점수 25점 일괄 적용

※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은 국가장학금 심사 성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

3) 인성 평가(40점)

○ 라이프가이드성적(20점)

백분위	95점이상	90점~95점미만	85점~90점미만	80점~85점미만	75점~80점미만	70점~75점미만
점수	20	18	16	14	12	10

※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, 편입생, 전공심화 입학생은 중간 점수 15점 일괄 적용

※ 직전학기 라이프가이드 과목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 적용

○ 교수평가(20점)

구분	배점				비 고
근면(성실)도	10	8	6	4	마일리지 점수, 봉사활동 시간, 학과 행사 참여도, 강의 출결 사항, 학습 태도 등을 고려
사회성(책임감)	10	8	6	4	

※ 교수 평가시 세부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계열/학과장이 협의하여 평가

4. 장애대학생 도우미 : 대상자 협의 후 선발

○ 성적 기준 : 직전학기 원성적 평점평균 3.5이상 성적기준 미적용

※ 국가장학금 심사 성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

○ 라이프가이드 교수 면접 평가(100점)

- 학년, 전공, 교양수업이 동일한 대상 중에서 도우미 적합성 평가

- 면접 평가는 장애학생 라이프가이드 교수가 실시

○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: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형과 동일하게 선발

1. 가산점(최대 10점)

구분	배점	상세기준	비고
주·야간구분	10	■ 야간교육과정 학생	

※ 가산점 부여 여부는 근로 기관별로 선택 가능하며, 학생선발 안내시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

2. 동점자 처리기준

1) 교내근로

순위	기준
1순위	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을 우선으로 함
2순위	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이 높은 학생을 우선으로 함
3순위	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동점자 처리 지침에 준하여 동점자 처리

<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동점자 처리 기준>

순위	기준
1순위	“최다학점” 취득자
2순위	“전공과목 총점평균”상위자 계산식:전공과목 총점평균=전공과목별(학점×총점)합계/전공신청학점(소숫점 5자리 이후 반올림)
3순위	“전과목 총점평균”상위자 계산식:전과목 총점평균=과목별(학점×총점)합계/전과목신청학점(소숫점 5자리 이후 반올림)
4순위	“연장자”순

2) 교외근로

순위	기준
1순위	선발일 기준 국가근로장학금 미수혜 학생
2순위	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을 우선으로 함
3순위	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이 높은 학생을 우선으로 함
4순위	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동점자 처리 지침에 준하여 동점자 처리

※ 상기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